

# 서울특별시 건축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(권영희 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566
----------	-----

발의년월일 : 2019년 3월 29일

발 의 자 : 권영희, 이정인, 김경우, 오현정,  
최기찬, 이동현, 양민규, 노승재,  
신정호, 고병국, 정지권, 권수정,  
이성배 의원 (13명)

## 1. 제안이유

- 「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 구제 등에 관한 법률」 제6조는 장애 차별을 금지하고 있으며, 유엔 장애인권리협약 제29조는 장애인이 정치 및 공적 생활에 효과적이고 완전하게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적극 조성할 것을 명시하고 있음.
- 「국가인권위원회법」 제8조 또한 “위원이 신체상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직무를 수행하기가 극히 곤란하게 되거나 불가능하게 된 경우”라는 표현은 장애에 대한 편견과 차별의 소지가 있어 “장기간의 심신쇠약으로”로 개정한 바 있음.
- 이에 따라 건축정책위원회의 위원 해촉 사유에 “장애” 용어를 사용하는 것은 장애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강화시킬 수 있어 관련 표현을 수정하며 오탈자 등 일부 내용을 정비하고자 함.

## 2. 주요내용

가. 위원회 위원 해촉 사유에 “장애” 표현을 수정함(안 제18조의2제1호).

## 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 구제 등에 관한 법률」 제6조  
「국가인권위원회법」 제8조

나. 예산조치 : 해당없음 (비용추계 비대상사유서 별첨)

다. 기 타 : 해당없음

## 서울특별시 건축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건축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8조의2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1. 장기간의 심신쇠약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

제21조 제2항 중 “위회”를 “의뢰”로 한다.

제22조의2 제2항 제4호 중 “심의 에”를 “심의회”로 한다.

### 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18조의2(위원의 해촉)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.</p> <p>1. <u>심신장애로 인하여</u>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</p> <p>2. ~ 3.(생략)</p>	<p>제18조의2(위원의 해촉)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.</p> <p>1. <u>장기간의 심신쇠약으로</u>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</p> <p>2. ~ 3.(현행과 같음)</p>
<p>제21조(조사·연구의 의뢰) ① (생략)</p> <p>② 제1항에 따라 조사 또는 연구를 <u>위</u> 회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.</p>	<p>제21조(조사·연구의 의뢰) ① (생략)</p> <p>② 제1항에 따라 조사 또는 연구를 <u>의</u> 회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.</p>
<p>제22조의2(건축정책의 시의회 보고) ① (생략)</p> <p>② 제1항의 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.</p> <p>1. ~ 3.(생략)</p> <p>4. 그 밖에 건축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제10조에 따른 위원회의 <u>심</u> 의 에 관한 사항</p>	<p>제22조의2(건축정책의 시의회 보고) 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제1항의 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.</p> <p>1. ~ 3.(현행과 같음)</p> <p>4. 그 밖에 건축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제10조에 따른 위원회의 <u>심</u> 의 에 관한 사항</p>